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운영근거 및 역할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5조

○ 위원임기 : 2년(2021. 11. 30. ~ 2023.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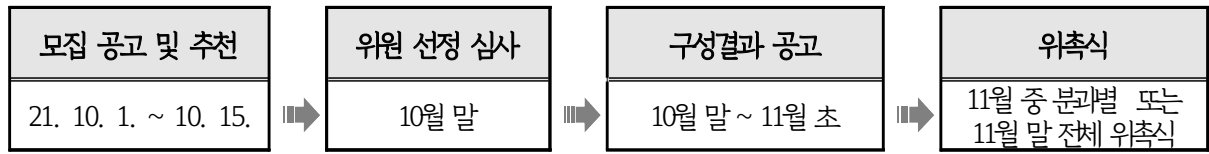
※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 임기 동일

○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고 개요

○ 구성절차



- 공고 · 접수 : 2021. 10. 1.(금) ~10. 15.(금) 18:00
- 제출서류 : 실무협의체 위원 또는 실무분과 위원 신청(추천)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 접수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898-9852, ✉suwon-aswc@daum.net)

○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비 고
실무협의체	- 관련 시설 · 기관 · 단체 추천 및 공모 한 자 중 임원회의에서 심의 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	
실무분과	- 관련 시설 · 기관 · 단체 추천 및 공모 한 자 중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결과통지 :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선정 위원 협의체 홈페이지 명단 게시

3. 공모 부문 및 인원 · 자격

1) 실무협의체 위원

공모 부문	공모인원	세 부 요 건
학계 및 연구기관	3	○ 수원시 소재 대학(연구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
시민사회단체	2	○ 비영리지원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원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중간관리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문화·환경	2	○ 수원시 소재의 문화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기관장(중간관리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수원시 소재의 환경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기관장(중간관리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청년	1	○ 수원시 소재의 청년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기관장(중간관리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실무분과 위원

○ 자격요건

- 수원시 소재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중간관리자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 기 활동 위원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출석률(65%) 이상인 자
- ※ 위원 선정 후 교육 및 위촉식 참여

○ 모집인원 : 각 분과별 당연직(공공)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실무분과											
연구 기획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시민 건강	영유아	아동	교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가족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실무분과별 역할 및 참여기관(안)

실무분과	역할	협력체계(안)	
		민	관
연구 기획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정책 이슈 개발, 조사·연구 ◦ 실무분과 활성화 및 동협이체 활성화 지원 ◦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지원 ◦ 지역돌봄체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시정연구원 등) -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 시민단체 및 사회보장 관련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협력팀장 - 복지자원팀장 또는 담당자 - 복지행정팀장 또는 담당자 - 복지기획팀장 또는 담당자 - 동 건강복지팀장
일자리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정책 검토 및 제안 ◦ 일자리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장애인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여성 일자리 담당기관 (여성자활, 여성 노동자복지센터, 새일센터 등) -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자활 등) -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팀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담당자 (노인 일자리 담당자)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담당자 (자활사업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장애인 일자리 담당자) - 일자리정책과 청년여성일자리팀 담당자 (여성 일자리 담당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상담 담당자

실무 분과	역할	협력체계(안)	
		민	관
주거 복지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지 정책 검토 및 제안 ◦주거복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주거복지지원센터 -LH 수원권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수요기관(사례관리 담당자, 휴먼서비스센터, 장애인, 노숙, 자활 기관 등) -청년 주거복지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복지팀장 -휴먼복지팀장 또는 담당자 -노숙 관련 팀장 또는 담당자 -청년정책 관련 담당자
문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평생교육, 체육, 관광 정책 검토 및 제안 ◦문화예술 등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평생학습, 체육, 여가,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단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수원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 기관단체 -체육시설, 여가문화시설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팀장 -평생학습팀장 또는 담당자 -예술팀장 또는 담당자 -인문학팀장 또는 담당자 -체육행정팀장 또는 담당자 -관광정책팀장 또는 담당자
시민 건강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민의 신체, 정신, 환경, 먹거리 보장 등 건강 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건강도시 전략 및 정책 논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건강한 먹거리보장 정책 지원 ◦건강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기관 -건강보험공단 -병원, 협회 -생협(의료, 먹거리) -환경운동단체 -건강 관련 단체 -복지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안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권선보건소 치매관리팀장 또는 담당자 -영통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또는 담당자 -팔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또는 담당자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또는 담당자 -생명산업과 식생활개선팀장 또는 담당자
영유아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검토 및 제안 ◦보육·유아교육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대표 -유아교육기관 대표 -부모모니터링단 -육아종합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동육아 관련 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책팀장 -보육지원팀장 또는 담당자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팀장 또는 담당자
아동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정책 검토 및 제안 ◦아동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아동 시설·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센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가정 위탁지원센터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팀장 -아동친화팀장 또는 담당자 -아동보호팀장 또는 담당자 -드림스타트팀장 또는 담당자 -교육청소년과 수원형 교육팀장 또는 담당자 -수원교육지원청 (초등학교사회복지사업담당)
교육 청소년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정책 검토 및 제안 ◦교육 정책 검토 및 제안 ◦청소년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청소년 시설·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재단 -청소년 단체, 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지원팀장 -교육정책팀장 또는 담당자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사회복지사업총괄담당, 교육복지담당 등)

실무 분과	역할	협력체계(안)	
		민	관
노인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정책 검토 및 제안 ◦노인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노인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 -노인시설 및 단체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정책팀장 -노인복지팀장 또는 담당자 -노인시설팀장 또는 담당자 -영통구보건소 치매관리 팀장 또는 담당자
장애인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정책 검토 및 제안 ◦장애인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시설, 기관 -장애인단체 -복지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시설팀장 또는 담당자 -장애인복지팀장 또는 담당자 -수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장 또는 담당자
이주민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 정책 검토 및 제안 ◦이주민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이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이주민 단체 -글로벌드림센터 등 이주청소년기관 -복지관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정책팀장 -다문화지원팀장 또는 담당자 -외국인지원팀장 또는 담당자 -장안구보건소 보건기획팀장 또는 담당자 -경찰(보안과 외사계)
여성 가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 정책 검토 및 제안 ◦여성·가족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여성·가족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시설, 기관, 단체 -가족 시설, 기관,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팀장 -여성친화팀장 또는 성평등전문관 -건강가정팀장 또는 담당자

[관 계 법 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40조 ④항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 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 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6조(실무협의체)

- ① 실무협의체 위원은 조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②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위촉 해제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실무분과)

- ① 실무분과 구성분야는 생애주기별 분야, 사회보장 전략별, 동인적안전망(동보장협의체 등),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구성한다.
- ② 실무분과의 신설 폐지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 검토를 통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례 제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종사자
3. 학계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4. 기타 공익 및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
5.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등

④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⑤ 조례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외에 분과회의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실무분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